

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1. 23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11.. 26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12. 20(목)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)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·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- 보훈영예수당 상향조정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명시(안제8조)
  - 월 3만원 ⇒ 월 5만원으로 인상
  -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유족으로 명시
- 조문내용 명확히 규정(안 제10조)
  - 관련법에 의거 보상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수당 지급 정지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매월 지급되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
  -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유족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보훈영예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1부